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안 사유

○ 국무총리실의 「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외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2. 제안 근거 :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및 국무총리실의 「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」

3. 주요 내용

○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(안 제7조제1항)

○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음(안 제7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붙임 :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”로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사무를 관장한다.”를 “사무를 행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령”을 “다른 법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0인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안전대책위원회”를 “안전관리위원회”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제7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“소재하는”을 각각 “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직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부의 될 의안”을 “상정 될 안건”으로 하고, “정리하는”을 “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	제명 : 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---------- 제11조에 따라 ----------.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~ 4. (생략) 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	**제2조(위원회의 기능)** ----------사무를 행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다른 법령----------. 6. 그 밖에 ----------.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 1.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군수) 2. ~ 6. (생략) 7.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.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 9. (생략)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이 된다.	**제3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----------1명------- 30명 ----------. 1. 안전관리위원회 -----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----- 있는 ----------. 8. ---------- 있는 ----------. 9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1명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. ② (생략)	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----------, 직무를 총괄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 ② ~ ③ (생략)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단서신설〉	**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** ① ---------- 상정 될 안건 ----------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-----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-----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